

# 2021년도 제16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29.(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5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57건(안전번호 제2021-67707호~6832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71476호~71478호는 온라인쇼핑몰 내 제품 사진 등이 권리자에 의하여 신고된 건으로, 해당 저작물 자체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게시자의 소명 등 없이 일률적으로 시정권고할 경우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따라서 대심제 구조가 보장되는 절차에 의한 권리자의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71479호~71505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블로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접근제한 조치되었으나, 접근제한이 해제될 경우 복제·전송이 재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71506호는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71507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71508호~71518호는 미국 만화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 또는 잠재적인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07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6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15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검토보고서 각주 4번에 기재되었듯 우리 위원회는 이런 안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본 안전에 대해 해당 입장을 변경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바랍니다.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과 민원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진정 상품이 맞는지? 그리고 가격은 동일한지?
- 오진해 전문위원: 동일한 상품으로 보임. 민원인도 상품의 진정에 대하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음.
- E 위원: 쇼핑몰별로 판매 개수가 한 개, 두 개로 다르게 묶여 있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우리가 고려하는 합법 시장이 저작물 시장에 한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부결이 맞지만, 민원인이 이런 사안에 대해 우리 심의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다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임.
- A 위원: 안전을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 원래 입장은 가결 의견임. 저작권 침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실제 문제제기의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즉 적극주의적인 입장임. 다만 우리 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이와 다름.

- B 위원: 민원인들은 이렇게 많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도와달라고 국가에 요청을 한 것인데, 제도의 목적과 다소 동떨어져있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D 위원: 저작물성은 인정이 되는지?
- B 위원: 일부 사진에 저작물성이 있는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하나의 사진만 두고 보면 저작물성에 의문이 있으나, 편집이 가해진 상품설명 전체로 보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C 위원: 제품 사진이 완전히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게시자가 별도로 찍은 사진이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완전히 같은 사진임. 유사한 심의사례에서 보았듯, 보통 병행수입이나 재판매의 경우 저작권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직접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심의대상의 경우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품 설명도 동일하게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민원인은 자신들 이외에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두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C 위원: 같은 입장에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부결해왔던 사안인데, 해당 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전체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지?

- A 위원: 그러함. 그래서 만일 입장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바로 가결 또는 부결하지 않고 전체위원회에 부의하여 다시한번 논의를 할 수 있음.
- C 위원: 이러한 사안이 많이 발견됨. 정품을 비싸게 파는 사이트가 있고 ●● 등의 오픈마켓에서 재판매업자가 같은 제품을 비슷하거나 더 싸게 파는 경우가 매우 흔함.
- 오진해 전문위원: 사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재판매행위, 병행수입과 같은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쇼핑몰 게시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방침임.
- A 위원: 우리 위원회가 계속해서 이런 부결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상품 판매와 관련된 공정 경쟁 다툼에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 민원인이 정말 필요하다면, 민·형사 사건으로 가져가서 해결할 수도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물 자체의 불법복제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취지임. 우리가 이러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가만 오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시정권고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하고자 하는 유사사례와 관련하여, 제2020-332회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한 언론 기사의 사례가 있음. 영상을 직접 찍은 기자가 자기 영상을 캡처, 도용해 본인 기사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 기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구제절차가



더욱 적절하고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었음.

- A 위원: 계속되는 논의의 요지는, 저작권 침해만 인정되면 모두 시정권고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시정권고 제도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취할지 여부임. 검토보고해 주신 의견대로 기존의 견해에 따라서 부결하실 수도 있고, 전체위원회에서 변경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음. 이 두 가지 입장 중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음.
- E 위원: 저는 기존대로 부결했으면 함. 특별한 점이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임.
- D 위원: 저 역시 원안대로 부결 의견임.
- C 위원: 지금 결정은 부결이지만, 한번 정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세분이 부결 의견이기 때문에 저와 B 위원님 견해는 불필요한 것으로 하고 안건번호 제2021-71476호~71478호는 부결로 하고,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논의 안건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1479호~71506호는 민원인들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검토보고서 작성 당시 안건번호 제20201-71499호~71505호는 해

당 블로그가 OSP 약관위반으로 인해 접근제한되었으며, 안전번호 제 2021-71506호는 해당 게시물을 게시자가 직접 삭제하였으나 연재 역시 접근제한 조치되었음.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1479호~7150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안전번호 제2021-71506호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7150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

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150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71508호~7151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1508호~7151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1519호~7220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영화)엑스맨: 다크 피닉스 (2019)’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1576호 ‘(영화)엑스맨: 다크 피닉스 (2019)’는 2019. 6. 5.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10포인트에 판매중임.

(영화 ‘(영화)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2019)’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1588호 ‘(영화)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2019)’는 2020. 1. 8.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520포인트에 판매중임.

(방송 ‘(방송)월간 집(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2182호 ‘(방송)월간 집(2021)’는 2021. 6. 16.부터 방영중인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72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1,070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71519호~7220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C, D, E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1519호~7220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 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71476호~71478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71479호~71505호, 제2021-71507호, 제2021-71508호~71518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71506호는 경고의 시정 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1-71519호~7220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6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6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6.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